



광 양 시

시보는 유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| | |
|---|-------|
| 선 | 기관의 장 |
| 람 | |



제15호(호외) 2023. 4. 13.(목)

고시

광양시 고시 제2023-1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 1

공고

광양시 공고 제2023-846호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(안) 공청회 개최 공고 2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| | | | | | | | | |
| 람 | | | | | | | | | | |

▶발행 : 광양시 ▶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 2713)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

광양읍 덕례리, 도월리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(기간연장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2023. 4. 13.

광 양 시 장

1. 제한지역 및 제한사유

가. 위 치: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, 도월리 일원

나. 면 적: 951,402㎡

다. 제한사유: 광양 덕례·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도시개발 사업 예정 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함.

2. 제한대상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(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지 분할, 보상을 목적으로 한 하우스 설치, 수목 식재 등)

3. 제한기간(변경)

- 기 정 : 2020. 4. 16. ~ 2023. 4. 15.

- 변 경 : 2020. 4. 16. ~ 2025. 4. 15. (증 2년)

4. 기타사항

가.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제한지역 고시 전에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나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다. 고시된 면적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시 도면을 우선 적용합니다.

5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택지과 비치)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택지과(☎061-797-29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 규정에 따라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(안)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4. 13.

광 양 시 장

1. **제목:**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(안)
2. **목적:**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수립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(안)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함.
3. **일시 및 장소**
 - 가. 일시: **2023. 5. 3.(화) 14:00**
 - 나. 장소: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(3층) (광양시 성황도이로 66-22)
4. **주요내용**
 - 가.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
 - 나. 도시의 공간구조 구상에 관한 사항
 - 다. 생활권별 구상에 관한 사항
 - 라. 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 등
5. **발표자에 관한 사항**
 - 가. 선정인원: 5명 내외
 - 나. 선정대상: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함. 다만,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함.
 - 다. 선정통보: 발표자 선정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자 모두에게 통지함.
6. **발표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**
 - 가. 신청기한: **2023. 4. 14 ~ 2023. 4. 20(7일간)**
 - 나. 신청장소: 광양시 시청로 33(중동, 광양시청) 도시재생과, FAX)797-2589
 - 다. 신청방법: 인적사항(주소성명연락처 등)과 발표요지를 기재하여 서면(우편·팩스)으로 제출
7. **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**
 - 가. 제출기간: **2023. 4. 13 ~ 2023. 4. 27(14일간)**
 - 나. 제출주소: bel216@korea.kr / FAX: 061-797-2589
 - 다. 제출방법: 정보통신망에 인적사항(주소성명연락처 등)과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
8. **기타사항:*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(☎061-797-342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